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693호

# 2025년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연번 | RFP 관리번호 | RFP명 | 총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연구비(억원) | | 선정 과제수 | 과제 형태 | RFP 유형 코드 |
|---|---|---|---|---|---|---|---|---|---|
| | | | | | '25년 | 총액 | | | |
| 1 | 2025-원자력-지정공모-11 | 장주기 소듐냉각고속로 기반 소형원자로 설계 및 평가 | '25.7.~'29.12. (4년 6개월) | '25.7.~'26.3. (9개월) | 7.0 | 290 | 1개 내외 | 일반 연구 개발 | M2-1 |

# 목 차


1. 사업개요 ····· 1

2. 지원내용 ·····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3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7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10

6. 선정평가 ····· 12

7. 기타사항 ····· 15

8. 향후일정(안) ····· 19

9. 적용 법령 및 규정 ····· 19

10. 문의처 ····· 20

# 1 사업개요

□ **사업명: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 **사업목적**

○ **민간기업 공동 개발을 통한 차세대 SFR 기반 선진원자로 실용화 기반 구축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25년~’29년 / 총 290억원(’25년 7.0억원)

□ **사업 내용**

○ **민간기업 공동 개발**을 통한 **차세대 SFR 기반 선진원자로 실용화** 기반 구축 및 수출경쟁력 확보

○ 旣확보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장주기 SFR 설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분야로의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해 ‘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에 진출할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국내외 실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차세대 원자로 산업 생태계 육성 기여**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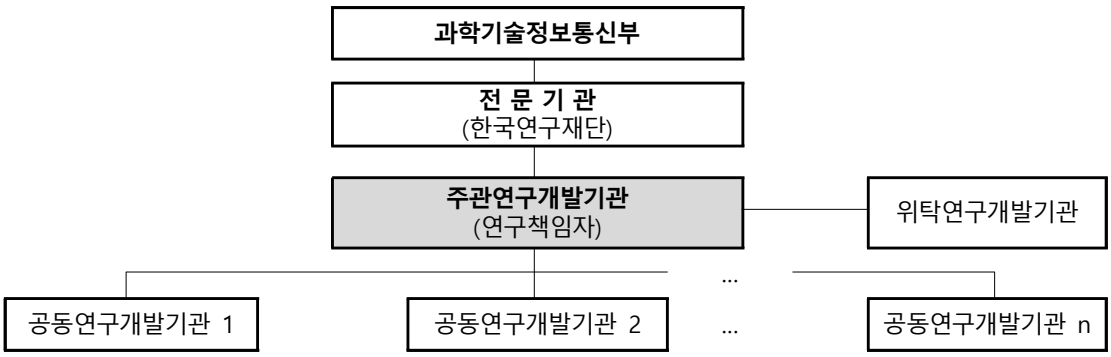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2 지원내용

### □ 지원 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

| 세부사업 (내역사업) | RFP 번호 | 연구주제명 | 연구비(억원) | | 선정 예정 과제 수 | 과제형태 | RFP 유형 코드 | 보안 등급 |
|---|---|---|---|---|---|---|---|---|
| | | | '25년 | 총액 | | | | |
|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 2025-원자력-지정공모-11 | 장주기 소듐냉각고속로 기반 소형원자로 설계 및 평가 | 7.0 | 290 | 1개 내외 | 일반연구개발 | M2-1 | 일반 |

###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RFP 번호 | 총 연구기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
| |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연구기간 | 연구비 |
| 2025-원자력-지정공모-11 | 2025.7.1.~ 2029.12.31. (3+2년) | 2025.7.1.~ 2026.3.31. | 7.0 | 2026.4.1.~ 2026.12.31. | 80.0 | 2027.1.1..~ 2027.12.31. | 70.0 | 2028.1.1.~ 2028.12.31. | 70.0 | 2029.1.1.~ 2029.12.31. | 63.0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원자력진흥법」제12조 제①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이 불가함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 신청 제한사항

###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이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기타 사항>

○ (선정 우선순위 제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이 초과되는 경우에 사전문의 및 우선순위(별첨 작성 양식 참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1 **연구자** | 2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우측의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2025년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연구개발계획서 內 첨부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 |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위탁기관 |
| **첨부1** | **[필수]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 | X | X |
| **첨부2** | **[필수]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X | X |
| **첨부3** | **[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 | ○ | ○ |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공고일자 기준 최근 5년 이내 차별성 검토 실시 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2025년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
| |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위탁기관 |
| **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3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4 |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 | X | X |
| 별첨5 |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 | ○ | X |
| 별첨6 | [해당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 | ○ |
| 별첨7 |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8 |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 ○ | ○ | ○ |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권고**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
|---|---|
| 연 5억원 미만 | 45쪽 내외 |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5쪽 내외 |
| 연 2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 **재공고 기간** | 2025.6.20.(금) ~ 7.1.(화) 18:00까지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6.20.(금) ~ 6.30.(월) 18:00까지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6.20.(금) ~ 7.1.(화)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된 경우 추가 재공모 없이 선정평가 실시
- ㅇ 기접수를 완료한 과제의 경우 수정 사항 없을 시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 ㅇ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 필수 작성 첨부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6 선정평가

###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 기본방향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 평가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연구계획 (40)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연구목표의 명확성<br>– 과제제안요구서(RFP) 부합성 및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br>– 연구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명확성 | 20 |
| | 연구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br>– 연구개발과제별 수행계획,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br>– 민관협력 네트워크(역할 분담 등) 구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 20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연구역량 (20) | 연구책임자 역량 및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br>- 주관/공동 연구책임자의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성과<br>- 참여연구원의 수행능력 및 구성의 적절성 | 20 |
| 성과활용 (40)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br>- 연구성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및 타 사업 연계성<br>- 연구결과물의 관련 산업 분야 파급효과 및 활용 가치 | 20 |
|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br>-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 20 |
| 합계 | | 100 |

## □ 평가절차

| ①사전검토 | ②서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 |

○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br>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br>※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가감점 제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하고, 가점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

○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해당 % 만큼의 점수를 가감점으로 부여 (최대 10% 이내)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

※ (예)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과제만 (최종)발표평가를 한 경우 발표평가 점수만 가점

- 적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출 마감일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

| 항 목 | | 적용 기준 |
|---|---|---|
| 가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5% 가점** |
| |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3% 가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 **5% 가점** |
| 감점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 감점** |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감점** |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및 정책연구용역과제(위탁)의 경우 제외

□ **평가 기타 사항**

○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차별성 검토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동점자 처리)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댓·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7 기타사항

〈필수사항〉

###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5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지원기준 |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구분 | 현금부담 비율 |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br>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
|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 8 향후일정

| 일정 | 내용 |
|---|---|
| 2025.6.20.(금) ~ 7.1.(화) | 재공고 기간 |
| 2025.6.20.(금) ~ 6.30.(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 2025.6.20.(금) ~ 7.1.(화)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 2025.7월 중 | 평가 실시 |
| 2025.7월 중 | 선정통보 및 협약 체결 |
| 2025.7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9 적용 법령 및 규정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 |
|---|---|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br>-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br>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br>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br>ㅇ 원자력진흥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br>ㅇ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 **기타** | ㅇ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br>ㅇ 2025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

## 10 문의처

###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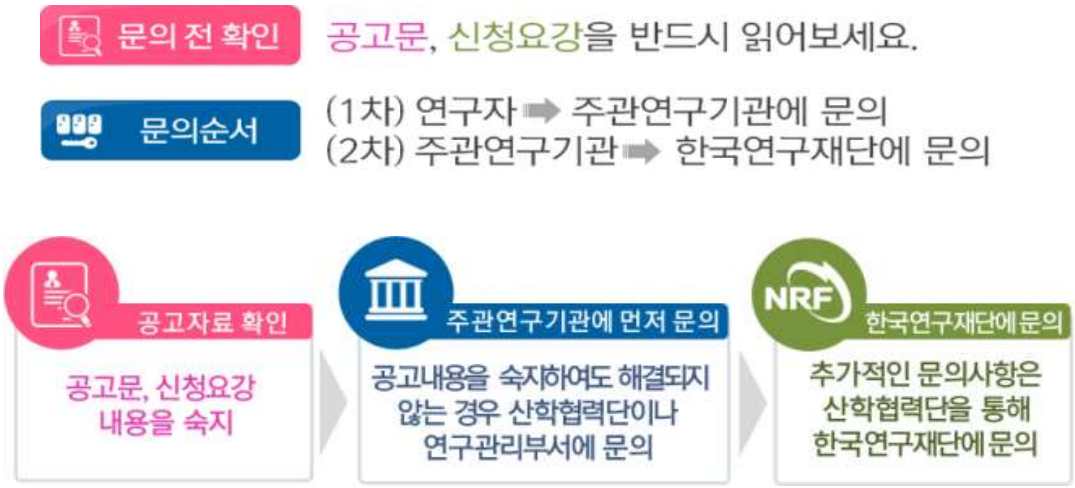


###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소식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br>원자력단 | 042-869-7818 | hgpark@nrf.re.kr |
| | | 042-869-7815 | rypark@nrf.re.kr |
| **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br>국책사업평가 2팀 | 042-869-7743 | yang@nrf.re.kr |
| | | 042-869-7748 | ghyu@nrf.re.kr |

붙임 1.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별첨자료 양식

4. 참고자료(신규공모 FAQ, IRIS 관련 매뉴얼 등)